

의안번호	2210125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7.25.
추계번호	25B256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신설 (비용부담의 특례 등)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 철도노선”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철도노선 연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은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름(제1항) 1.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1조의2신설(비용부담의 특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로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으로서,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비율은 법 제21조제4항¹⁾에도 불구하고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²⁾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철도건설 비용은 일반철도의 경우 국고 부담으로 고속철도의 경우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하며, 국가 외의 자의 요구로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그 요구자(원인자)가 부담함
- 개정안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이 되는 철도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

1)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를 실시한 기존 철도노선의 연장사업으로서, 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을 곱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 국비 부담 추정금액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금액과 사업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현시점에서는 사업대상과 국비 부담 규모 기준이 불확정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추진중(또는 추진예정)인 철도노선 연장사업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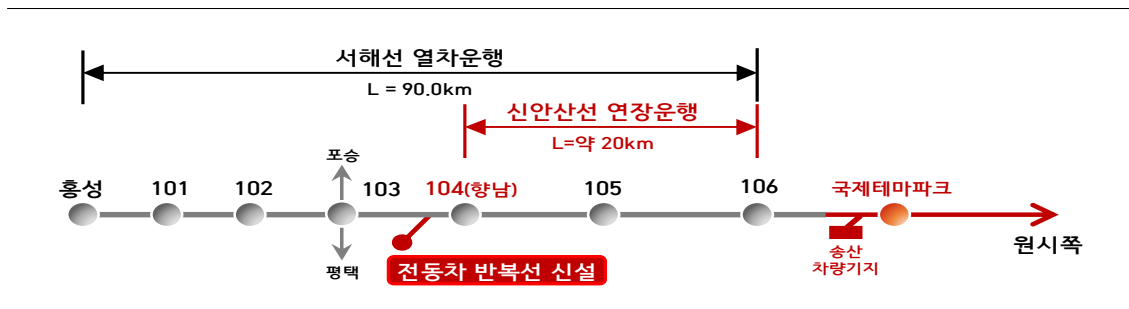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추진중인 철도노선 연장(예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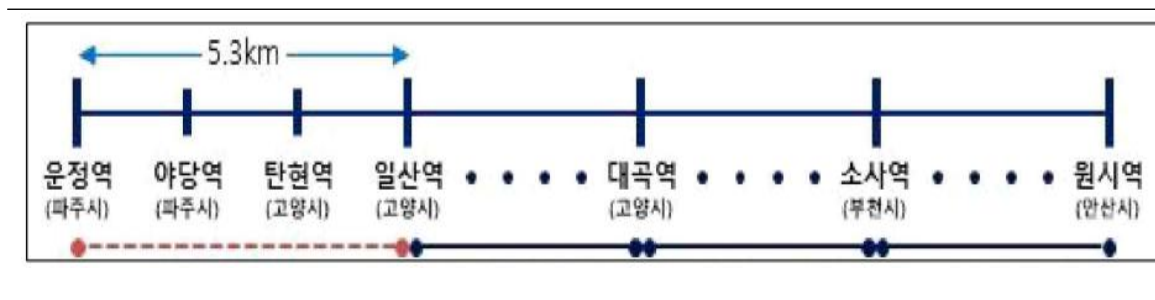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신한산선 향남역 연장



- 사업목적 : 화성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 서해선 향남역 구간 전동열차 반복선 신설
- 사업구간 :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 서해선 향남역
- 사업기간 : 2023 ~ 2027년
- 사 업 비 : 1,289억원(화성시 100%)

2. 서해선 운정역 연장



- 사업내용 :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 사업구간 : 경의선 일산역~운정역 5.3km 및 환승역 3개소(탄현,야당,운정)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 사 업 비 : 11,400백만원(과주시 100%)

- 실시설계 완료 후 산출된 총사업비에 따라 확정
- 전동열차(4량 1편성) 구매비 및 사업관리비 추가 반영 예정

3. GTX-A·B·C 연장사업 개요

□ 사업구간

- A(동탄)~평택(20.9km, 1개역)
- B(마석)~가평~춘천(55.7km, 2개역)
- C(덕정)~동두천(수원)~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79.5km, 7개역)

□ 재원: 연장사업 요구자인 지자체 원인자 비용부담

□ 추정사업비: A구간(2,532억원), B구간(1,219억원), C구간(4,479억원)

□ 사업비 및 정차역은 타당성검증단계에서 검토된 추정사업비용으로 확정
된 사업비용 및 정차역은 아님